

제 1 호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4년 08월 0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담당자 : 현광철

문의전화 : 031-5189-2798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천 *철 1963-02-01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4년 07월 24일

장안면장 인

